

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5.1조 목적

이 장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가. 관련 국제기구에 의하여 개발된 국제표준, 지침 및 권고를 고려하여 양 당사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증진하는 것
- 나. 양 당사국의 영역 내의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면서, 양자 간의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 그리고
- 다.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의 기술협력과 협의를 강화하는 것

제5.2조 적용범위와 정의

1. 이 장은 양 당사국 간의 양자 무역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당사국의 모든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채택 또는 시행에 적용된다.

2. 이 장의 목적상,

- 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 협정 부속서 1가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그리고
- 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의 부속서 가에 포함된 정의가 적용된다.

제5.3조 일반 규정

1. 양 당사국은 관련 국제기구에 의하여 개발된 국제표준, 지침 및 권고를 고려하여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상의 서로에 대한 자국의 기준의 권리 및 의무를 재확인한다.

2. 어떠한 당사국도 자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를 양 당사국 간의 무역에 대한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또는 위장된 제한으로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4조 기술협력

1.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의 규제 체계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양 당사국의 역량을 강화하고,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의 신뢰를 획득하며, 그리고 양자 간의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위생 및 식물위생 분야의 기술협력을 위한 기회를 모색하기로 합의한다.
2. 양 당사국은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에 관한 협력을 적절히 고려한다. 그러한 협력은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르며 다음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 가. 국제 표준 및 국내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개발과 적용에 대한 경험교환 및 협력 강화
 - 나. 특히 위험 분석 방법론, 질병 또는 병해충 관리 방법, 그리고 실험실 시험 기술에 대한 협력 강화
 - 다. 동물 질병과 식물 병해충 관리에 대한 양 당사국의 역량과 신뢰 구축을 목적으로, 권한 있는 당국의 관련 공무원 교류 프로그램 개발
 - 라.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중대한 동물 질병이나 식품안전 관련 사고의 발생 및 관련된 국내 규정과 그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 후속 조치에 대한 정보교환
 - 마. 양 당사국의 세계무역기구 위생 및 식물위생 문의처 간의 협력 및 경험 교환 강화
 - 바. 동물 질병, 식물 병해충 및 식품안전을 포함한 위생 및 식물위생 분야에서의 공동연구 수행 및 그 연구 결과의 공유, 그리고
 - 사. 양 당사국에 의하여 상호 합의된 그 밖의 모든 협력 활동

제5.5조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위원회

1. 이 장의 효과적인 이행과 운영의 목적상, 양 당사국은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에 대하여 각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대표들로 구성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하기로 합의한다.
2.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 가. 이 장의 이행 점검
 - 나. 양 당사국 간의 무역에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 당사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대한 관련 정보를 교환하는 포럼 제공

- 다. 양 당사국 간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개발 또는 적용에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하여 협의와 검토 수행, 그리고 필요시,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의하여 합의된 조건을 기초로 합리적인 기간 내에 기술작업반 설치를 긍정적으로 고려
- 라. 각 당사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와 그러한 조치에 관련된 규제 절차에 대하여 상호 이해 증진
- 마. 국제 포럼에서의 협력 노력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 간의 기술협력 확인, 논의 및 검토, 그리고
- 바. 양 당사국에 의하여 상호 합의된 그 밖의 기능 수행

3. 각 당사국은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을 담당하는 적절한 대표들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하도록 보장하고, 위원회에 의한 모든 결정은 상호 합의로 한다.

4. 위원회는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1년 이내에 그리고, 그 후 최소한 연 1회 또는 양 당사국에 의하여 상호 결정된 때에 직접 회합한다. 회의는 원격회의, 화상회의 또는 양 당사국에 의하여 상호 합의된 그 밖의 수단을 통하여 수행될 수 있다.

5. 양자 간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한쪽 당사국에 의하여 채택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하여,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을 이행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양 당사국은 필요한 경우 양 당사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에 대한 상호 관심 사안을 다룰 목적으로, 그 요청일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위원회에 의하여 합의된 조건을 기초로 협의를 개시한다.

6.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 후 90일 이내에 위원회의 각 당사국 수석대표를 확인하고 위원회의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서한의 교환을 통하여 위원회를 설치한다.

7. 위원회 회의를 조율하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정보교환의 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양 당사국은 제공된 정보가 최신임을 보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접촉선을 지정한다.

- 가. 한국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그리고
 - 나. 베트남의 경우, 농업농촌개발부,
- 또는 그들 각자의 승계기관

제5.6조 분쟁해결

제15장(분쟁해결)의 규정은 이 장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도 적용되지 아니한다.